

수당(여비) 및 재해보상



- **소집수당**
 - ① 화재의 경계와 진입업무 지원 등 "의용소방대법"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 (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)
 - ② 그 밖의 교육·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(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준용)



※ 군산 순직의용소방대원 추모 위령제(매년 개최) ※ 의용불멸의 비

● 재해보상

의용소방대원이 법령에 따른 임무수행 및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, 부상, 사망한 때에는 시·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

- ① **요양보상** :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, 치료비 등을 지급
- ② **장애보상** :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원치된 후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
- ③ **장례보상** :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
- ④ **유족보상** :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

의용소방대의 역사



- ① 1894년 지역별 소방조 활동
- ② 일제강점기(1910~1945) 각 읍·면에 소방부 설치
- ③ 1948년 정부수립 후 각 지역별 의용소방대 활동
- ④ 1958년 「소방법」 제정(서울특별시, 시·읍 의용소방대 구성)
 - ※ 소방서장의 소방, 수방 업무 보조
- ⑤ 1991년 시·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 개정(광역행정체제)
- ⑥ 2004년 의용소방대 설치규정(「소방기본법」)
- ⑦ 2014년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 - ※ 의용소방대 설치 및 임명, 교육, 복제, 수당, 재해보상 등 규정
- ⑧ 2014년 「의용소방대 복제세칙」 제정(훈련)
- ⑨ 2021년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
 - ※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(3.19)



소방훈련 소화기 기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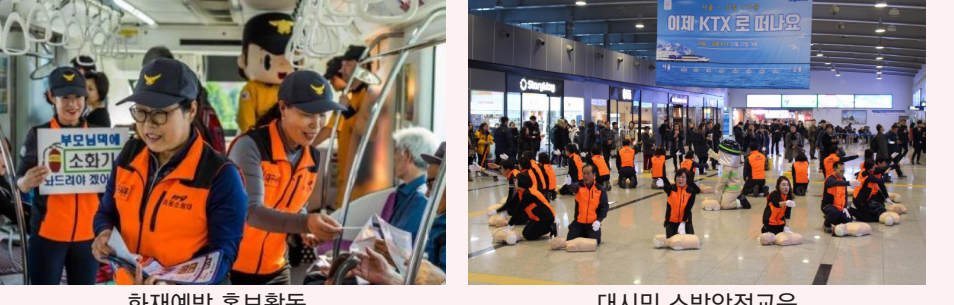


화재예방 홍보활동 봉사활동

최근 활동사진



소방훈련 산불진화



화재예방 홍보활동 대시민 소방안전교육



코로나19 방역활동 헌혈활동



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화재피해주민 복구지원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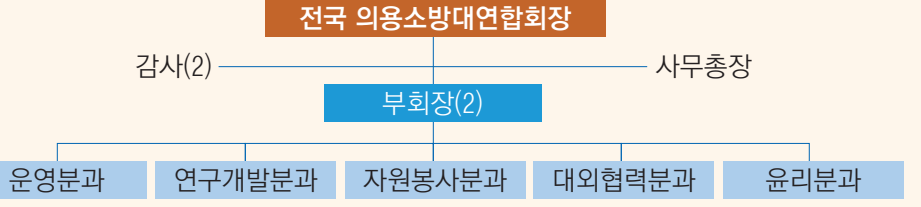
강의경연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

전국의용소방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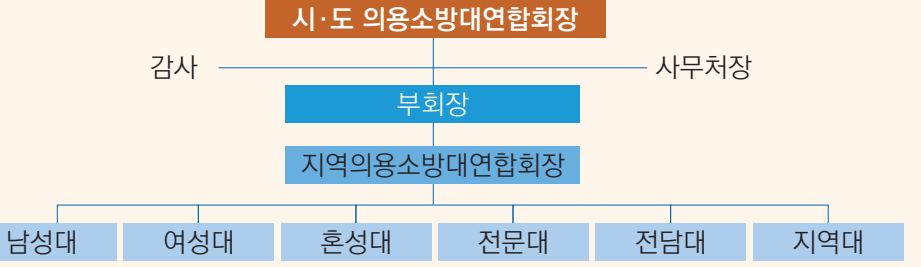
● 조직현황(2021.12.31)

구분	계	남성대	여성대	혼성대	지역대	전문대	전담대
대/명	3,921	95,645	1,416	37,200	1,279	30,927	106
	2,900	640	13,947	297	6,207	186	4,464

- **조직도**
| 전국연합회 : 5개분과 | 회장 등 임원 4명, 분과위원 36명



- | 시·도 연합회 : 18개 시·도 연합회 |



- **입대문의** : ○○소방서 ○○과 전화번호(○○○-○○○-○○○)
- ※ 인근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직접 방문상담 가능

의용소방대 마크

- 용맹을 상징하는 새매와 어둠을 밝히는 횃불, 평상시에는 생활전선에서 예방·경계하지만, 항상 가슴에 횃불을 들고 있어, 유사시에는 재난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가 희생과 봉사를 하는 누구에게나 태양처럼 밝고 희망찬 의용소방대를 상징
- 전체 형상이 V자로 언제나 승리하는 조직을 의미



국민과 함께한 100년,
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의용소방대

의용소방대 안내서



내 고장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



의용소방대란?



의용소방대 정의

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,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

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

-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
- ② 구조·구급 업무 보조
-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
-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
- ⑤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-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- ⑦ 그 밖에 화재예방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※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의용소방대 캐릭터 용이와 방이

기동복과 정복을 입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미지로 표현한 캐릭터

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모습을 표현



지원자격 및 선발절차



지원자격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, 시·읍 또는 면에 거주 및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

- ①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
- ②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
- ③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④ 소방기술관련 자격·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
- ⑤ 의사·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⑥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

정년 : 65세

선발절차

- ① 모집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수시·추천 모집
- ② 서류심사 : 지원자는 임명구비서류 제출
※ 입대신청서, 이력서,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, 사진(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) 2장,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③ 선발심사 : 1차) 서류심사 2차) 면접심사(필요시)
- ④ 근무지역 : 거주 및 상주지역 의용소방대
- ⑤ 임명권자 : 관할 소방서장

의용소방대원증



혜택 및 특전



다양한 복지혜택

- ① 임무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
- ② 임무수행 시 활동비 지원, 재해보상 보험가입(시·도별 상이함)
- ③ 우수대원 장학금 지원
- ④ 우수대원 포상 기회 부여
· 훈장, 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, 행안부장관 표창, 소방청장 표창
· 시도지사 표창, 시군구 표창,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
- ⑤ 우수대원 국내·외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
- ⑥ 남성대원 민방위대 편성 면제(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)
- ⑦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피해 일체 지급
- ⑧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, 교육·훈련으로 질병, 부상,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
- ⑨ 전문자격(심폐소생술, 생활안전강사 등)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



의용소방대의 날 운영

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, 업적을 기리는 날

의용소방대원 복제



※ 의용소방대원은 임무수행 시 복제를 착용하고,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복제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(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)

제복



모자 및 신발



부착물



부속물: 셔츠, 넥타이, 금장단추, 요대 및 버클, 이름표, 등판표시, 기표장

*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(소방청훈령 제242호)

의용소방대 조직



다양한 복지혜택

- 의용소방대는 대장, 부대장, 부장, 반장, 대원으로 구성

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

구분	역할	
일반의용소방대	남성의용소방대	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
	여성의용소방대	
	혼성의용소방대	
	지역의용소방대	
전문의용소방대	산악,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	
전담의용소방대	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	

의용소방대 조직도



법률 및 교육훈련 등



관련법령

- ①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③ 각 시·도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④ 각 시·도 「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」
- ⑤ 각 시·군·구 「의용소방대 지원 조례」
- ⑥ 「의용소방대 복제 세칙」(훈령)

교육훈련 구분

구분	기본교육	전문교육
교육대상	신규 임용 후 2년 미만대원	기본교육 이수대원
교육시간	36시간(2년 이내)	연 12시간
교육내용	· 의용소방대 제도 · 화재진압장비 사용법 ·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 관리 등	· 수난구조 · 산악구조 ·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

해임사유

- 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
- ②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,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
- ③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
- ⑤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·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
·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·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· 소송·분쟁·쟁위에 참여하는 행위 등
- ⑥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⑦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경비, 소집수당, 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